

제32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32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1 시험개요

○ 선발인원 : 총 300명 ※ 입영시기는 병무청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구분 (원서접수 시 가수선택)	선발인원	입영시기	비고
제64기	150명	2019. 8월(예정)	
제65기	150명	2019. 10월(예정)	

○ 선발일정

시험구분	시험기간	장소	합격발표
• 응시원서 접수 • 응시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심사 (신체검사 서류심사로 대체)	'19.1.18.(금) 10:00 ~ 1.24.(목) 18:00 ※ 원서접수 취소기간 : 상동	·원서접수 : 인터넷(http://www.119gosi.kr) ·서류제출 : 등기우편 또는 인편	
• 체력검사	'19.1.28.(월) ~ 2.8.(금)	·중앙소방학교	2.11.(월)
• 필기시험	'19.2.25.(월) ~ 2.28.(목)	·대전시, 제주도 (별도공고)	3.7.(목)
• 면접시험 (인성검사)	'19.3.16.(토)	·천안시, 제주도 (별도공고)	4.3.(수)
	'19.5.13.(월) ~ 5.17.(금) ※ 인성검사 : 4.23.(화)~26.(금)	·중앙소방학교 (인성검사 : 천안, 제주)	5.30.(목) 14:00

○ 시험종목 및 방법(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시험종목	방법	세부내역
신체검사	서류심사	제출서류로 신체검사 대체 및 제출서류 적합여부 심사
체력시험	4개 종목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필기시험	3개 과목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50%+일반상식 50%)
면접시험	개별면접	면접위원이 응시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

○ 응시자격 (응시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기준일 : 최종 원서접수일

① 2019년 현재 18세 이상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 2019년 현재 2001. 12. 31. 출생자까지 지원가능

※ (향후 변경사항)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개정(2019.7.1.시행)으로, 제33차(20년 상반기 입영예정) 모집 시, 만 18세이상 28세 이하의 자로 연령기준 적용 예정

② 병역준비역(1급~3급) 또는 보충역(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2)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수사, 재판 계류 중인 자 포함)

다.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5호}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원서접수 마지막일 기준)

- 합격자 중 최종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자로 판정(병무청)되면 합격 취소

② 시험준비

1. 원서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결과 공고 : 1.25.(금)

구분	준비물	원서접수	접수 확인	서류제출 (등기 및 방문)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 반명함사진 파일 ㉡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로그인 ↓ 준비물 입력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확인	준비물 ㉡ 제출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 반명함사진 파일 ㉢-1 공무원신체검사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준비물 ㉢-1, ㉣ 제출

○ 접수기간 : 2019. 1. 18.(금) 10:00 ~ 1. 24.(목) 18:00

※ 원서접수 취소 : 원서접수 기간 내만 가능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 접속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등록 : 사진파일(JPG, GIF,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반명함사진(3cm×4cm)

※ 사진제한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물·식물·배경·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첨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 없음

2.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19. 1. 18.(금) ~ 1. 24.(목)

※ 방문제출 : 평일 09:00~18:00까지 인재채용팀 사무실, 휴일·점심(12:00~13:00)제외

○ 제출방법 : 등기우편(1.24 소인분까지 인정) 또는 중앙소방학교 방문 제출(응시자 선택)

○ 제출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 병무민원포털(인터넷)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출력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①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②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응시자는 반드시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제출
(다만 병역판정검사 결과 이상 있는 응시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및 「공무원 신체검사서」 또는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등과 같이 제출하는 것은 가능)

- 응시자격 판단은 제출서류로 판단, 신체 적합여부 및 서류제출은 응시자 본인이 소명

♣ 서류제출 주의사항(필독)

- ①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 당시 신체조건이 의무소방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후 치료, 수술 등으로 신체조건이 지원자격에 해당되면 해당 분야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응시하는데 이상 없음

- ㉠ **색각이상자**는 공무원 신체검사서, 진단서 등 제출서류에 중증도(약도, 중등도, 강도)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

- ㉡ **혈압이상자**는 신체검사서, 진단서 등 제출서류에 협압측정 결과값이 표기 되어야 하며, 결과값 표기 없이 측정결과 기록지 첨부 없이 “정상”으로 표기한 경우 **불합격 처리**(측정기록지 첨부)

- ㉢ **신체검사 이상자의 측정결과**는 보조기구(장치), 약물 등 미사용 측정된 결과만 인정

- ② 의사진단서, 공무원 신체검사서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것만 제출(직인날인)
- 종합병원 검색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③ 서류제출 방법(응시자 선택 - 등기우편 또는 인편)

<등기우편> : `19.1.24.(목) 발송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

※ 우편물에 접수번호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예시) 접수번호 0000 홍길동 (010-123-4567)

우편번호(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응급구조교육관 2층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의무소방원 선발담당)

<인 편> : 제출기간 중 평일 09:00~18:00까지 인재채용팀 사무실 방문 제출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접수 받지 않음)

④ 불합격 처리기준

- 인터넷 원서접수만 하고 서류 미제출(미비) 또는 다른 서류 제출한 응시자
- 인터넷 원서접수 없이 서류 만 제출한 응시자
- 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인재채용팀에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공무원신체검사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응시자
(예시) 보건소, 의원, 한국건강보험관리협회, 일반병원 등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금지
- 제출된 신체검사 관련 서류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응시자
- 신체검사 시 약물 등을 복용 후 신체검사를 받은 응시자

③ 신체검사 등 서류심사

- 심사기간 : 2019. 1. 28.(월) ~ 2. 8.(금) ※ 2.8.(금) 시험관리위원회 운영
- 검사방법 : 제출서류로 신체검사 대체 및 제출서류 적합여부 심사

구분	심사서류(제출서류)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 병무민원포털(인터넷)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조회 및 출력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①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 2018.1.18. 이후 발행한 서류에 한함 ②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 심사방법 : 신체기준 및 응시서류 적·합여부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신체기준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구분	기준 (※ 1개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참조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준용)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합격자 공고 : 2019. 2. 11.(월)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s://www.nfsa.go.kr>) 게시

4 체력시험

♣ 체력검사 주의사항

- 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 대전, 제주도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장소 변경 불가
- 응시인원에 따라서 시험기간(일자)은 변경 시행 될 수 있음
- 체력검사일 선택 : '19.2.13.(수) 14:00 ~ 2.14.(목) 18:00(원서접수사이트) - 선착순
- * 체력검사일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체력검사일 임의배정

○ 시험기간 및 장소

※ 시험장 공고 : 2019.2.11.(월)

장소	대전광역시	제주도
시험기간	2019. 2. 25.(월) ~ 2. 28.(목)	2019. 2. 28.(목)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등록 완료(이후 시험불가)

○ 응시자 준비물 : 운동복(상·하의), 운동화, 응시표*, 신분증**

* 응시표 출력 : '19.2.20.(수) 16:00부터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학생증 불인정)

○ 검사종목 : 체력 4종목

종 목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합격기준	205cm이상	26회 이상 (1분)	8.5초 이내	6분19초 이내

※ 1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처리**

○ 검사판정 : 대한육상연맹 추천 판정관(종목별 1명)

○ 합격기준 : 체력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합격자 공고 : 2019. 3. 7.(목)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s://www.nfsa.go.kr>) 게시

5 필기시험

1.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19. 3. 16.(토) 11:00 ~ 12:00
 - 응시자 시험장 건물 10:30까지 입장완료(이후 입장금지)
 - 시험장 공고 : '19.2.21.(목)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장 변경 불가
- 시험장소 : 천안, 제주(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 시험과목 : 3과목(국어, 국사, 일반상식)
- 시험문항 및 시간 : 60문항(과목별 20문항), 총 60분(1문항 당 1분)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신분증**
 - * 응시표 출력 : '19.3.11.(월) 16:00부터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학생증 불인정)

2. 출제문제 이의제기 등

가. 문제지 및 가(정)답안 공개* 일시 : 2019. 3. 16.(토) 14:00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s://www.nfsa.go.kr>)에 게시

나. 이의제기

- 운영기간 : 2019. 3. 16.(토) 14:00 ~ 3. 17.(일) 24:00
- 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에서 신청
- 절차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이의제기서 첨부*
 - *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내용 :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 ※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3. 필기시험 점수 등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가. 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 : 2019.3.25.(월) 14:00 ~ 3.26.(화) 18:00 / 2일간

나. 공개방법 :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에서 공개(접속 → 로그인 → 성적조회)

다. 공개내용 : 응시자 본인 필기시험 점수

라. 이의제기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점수 문의 → 점수 이의제기*

마. 이의제기 답변방법 : 2019.3.27.(수)~3.28(목) / 원서접수사이트 답글

- * 점수 이의제기 서식
1. 응시번호
 2. 응시자 성명
 3. 사전공개점수(과목A 80, 과목B 60, 과목C 70)
 4. 본인채점점수(과목A 85, 과목B 65, 과목C 75)

4.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 공고일시 : 2019. 4. 3.(수) 14:00
-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 게시

♣ 필기시험 합격기준

- 합격대상 :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120%)의 범위 안에서 결정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

6 면접시험

1. 범죄경력 및 병적기록부 조회

- 조회기간 : 2019. 4. 4.(목) ~ 4. 19.(금)
- 조회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조회내용 ※ 부적합자 응시자 개인별 유선통보

구분	확인사항
범죄경력 조회 (경찰청)	•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여부
병적기록부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현역병 입영일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 여부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

2. 인성검사

- 검사기간 : 2019. 4. 23.(화) ~ 4. 26.(금)
 - ┌ 인성검사일 선택 : '19.4.12.(금) ~ 4.15.(월) / 원서접수사이트(선착순)
 - └ 제주지역 응시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검사일 임의지정
- 검사대상 : 범죄경력(병적기록부) 조회결과 → 적합으로 판정된 자

- 검사장소 : 천안, 제주(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 추후 검사장소 변경 불가)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신분증
- 검사방법 : 집합검사
 - * 신분증지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학생증 불인정)
- 검사내용 : 성격유형 검사(PAI) ※ 면접시험 기초자료로 활용

3. 면접시험

- 시험일시 : 2019. 5. 13.(월) ~ 5. 17.(금) / 5일간
 - ┐ 면접시험일 선택 : '19.4.12.(금) ~ 4.15.(월) / 원서접수사이트(선착순)
 - └ 면접시험일 미 선택 시 면접시험일 임의배정
-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 시험대상 : 범죄경력(병적기록부) 조회결과 → 적합한 응시자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 * 응시표 출력 : '19.5.3.(금) 16:00부터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학생증 불인정)
- 면접방법 : 개별면접
- 면접내용 : 국가관, 소양, 용모품행, 성격
 - * 의무소방대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항목 중 일반상식은 생략

7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 공고

- 공고일시 : 2019. 5. 30.(목) 14:00
-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s://www.nfsa.go.kr>) 게시

♣ 최종 합격기준

- 면접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결정(총 300명, 각 기수별 150명)
- 동점자 발생 시 합격결정 순위(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 ①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 ②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2. 최종 합격증 발부

- 발부기간 : 2019. 6. 3.(월) ~ 6. 7.(금)
- 발부대상 : 최종 합격자
- 발부방법 :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발송

8 주의사항

1. 공통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필기·체력·면접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시험을 실시하는 건물)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 시험장의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학교) 내에서 절대 금연입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소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종료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신분확인이 불가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신체검사)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최종 원서접수일 기준이며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붙임6)과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중앙소방학교로 변경일 기준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체검사(서류제출) 유의사항

- 의사진단서(소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응시자 본인이 병무청을 방문·발급 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인터넷 출력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스캔, 사본, 팩스 불가)

- 공무원신체검사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본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main.do>)에 접속하여 종합병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신체검사를 예약 후 방문,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까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색각, 혈압 이상자는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후 시험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체력검사 유의사항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검사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검사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검사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체력검사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사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검사 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체력검사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보조장구(스파이크 신발 등)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체력검사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필기시험 유의사항

-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을 사용하거나 답란에 잘못 기재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함.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예비마킹을 했을 시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요청 가능

- 농도가 얇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책형(A형·B형)을 확인하여 답안지에 표기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수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교체 요청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답안, 책형,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앞면, 뒷면)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를 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종료 후(벨 또는 음악 방송 즉시) 일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작성한 답안지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은 시계인 경우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방송(벨)으로 안내되는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해서는 안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필기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5.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 입영기일이 29일 이내의 자(지원 자격이 없는 상태)가 의무소방원에 지원하고 추후에 연기하는 경우, 접수 시에 위법이 있고 추후에 연기하더라도 그 위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접수를 취소하고 입영연기를 한 후에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입영기일이 29일 이내의 자(지원 자격 없는 상태)는 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추후에 병무청에서 위법상태가 밝혀져 합격이 취소됩니다.

6. 기타사항

- 인성검사를 받지 않은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력시험일, 인성검사일, 면접시험일 희망일자 신청을 하지 않은 응시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임의 배정한 일자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문자안내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여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및 공고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는 모두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휴일제외, 평일 09:00 ~ 18:00)

◇ 시험문의(체력, 필기, 면접)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연락처 : 041-550-0927(내선1)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우편번호: 31068

◇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에니아소프트
- 연락처 : 043-219-1332

- 붙임 1. 의무소방원 체력검사 측정기준 1부.
2. 종합병원 확인방법(전국 종합병원 현황 별첨) 1부.
3.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5. 의무소방원 선발 필기시험문제 문의(질의)서 1부.
6.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7.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원서접수 예시 1부. 끝.

의무소방원 체력검사 측정기준

□ 체력측정 기준

연번	종 목	측정방법	합격기준
1	윗몸일으키기	1회 측정, 횡수기록	26회 이상 / 1분
2	50m 달리기	1회 측정, 시간기록	8.5초 이내
3	제자리 멀리뛰기	2회 측정, 최고기록	205cm 이상
4	1,200m 달리기	1회 측정, 시간기록	6분 19초 이내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50m 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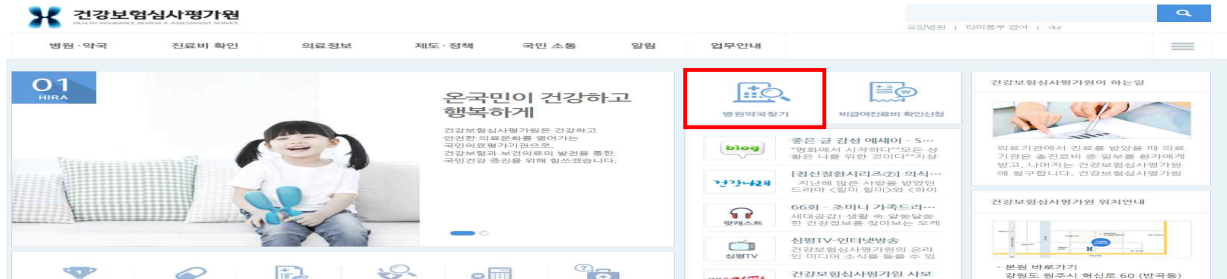
□ 체력측정 방법

1. 윗몸일으키기 : 양발을 30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횡수를 측정)
2. 5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점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3. 제자리멀리뛰기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
※ 발 구름판을 넘는 경우 파울로 실격처리
4. 1,2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붙임 2>

종합병원 확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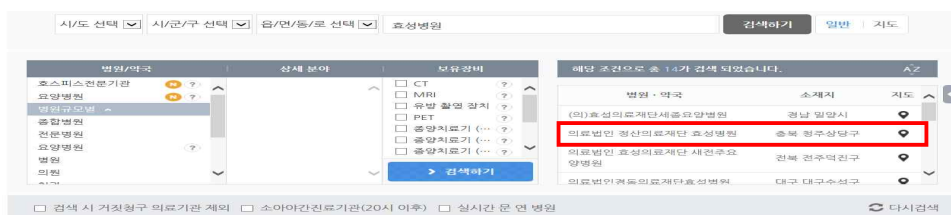
-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main.do>) 접속
- ② 병원약국찾기 클릭



- ③ 병원·약국찾기에서 병원명 입력 후 검색하기 클릭



- ④ 병원·약국 찾기에서 검색한 병원명 클릭



- ⑤ 기본정보의 병원구분에서 종합병원 여부 확인



<붙임 3>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앞쪽)

신체검사일								
수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 판정 신체 검사 사항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	시력		혈압(mmHg)		
	cm	kg		좌	우	수축기	이완기	
	색각	안과	내과	외과				
				일반·흉부·신경		정형·성형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치과	혈액형	
	임 상 병 리 검 사							
	간기능		간 염		혈뇨	단백뇨	당뇨	혈당 검사
	AST	ALT	B형	C형				
	혈구검사(CBC Count)				현미경검사(혈뇨 또는 단백뇨 '이상'일 경우)			
	WBC	RBC	HB	PLT	M-WBC		M-RBC	
	병역처분 등	신체 등급			병역처분			
	학력			재학연기				
이상이 있는 검사 과목 병명								
참 고 사 항								

(뒤쪽)

안내사항						
연령별 병역의무 이행과정	19 세		20세이상 ~ 35세까지 (기피자등은 37세까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31까지	40세까지	45세까지
	병역 판정 검사	현역병 입영대상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	향토예비군 복무	예비군 추가편성	전시 병역의무 기간연장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소집		
		병역면제	병역제외			
역종별 병역복무 내용	역종별		복무내용			복무기간
	현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결정된 징집순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현역 (상근예비역)		현역복무 5주(군사교육)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 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근무			
	보충역		○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또는 행정업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 다만,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은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군사교육을 받지 아 니하고 바로 위 복무기관에 소집되어 복무			24개월
	전시근로역		전시에 근로소집되어 군사 지원업무 수행			
임상병리 검사 결과	AST(간기능검사) * 지방간, 급·만성간염		정상 : 0 ~ 40(IU/L)	ALT(간기능검사) * 지방간, 급·만성간염	정상 : 0 ~ 41(IU/L)	
	B형 간염(보균여부)		음성 : 정상, 양성 : 이상	C형 간염(보균여부)	음성 : 정상, 양성 : 이상	
	단백뇨(신장, 방광)		정상 : 1+ >, 이상 : 1+ <	혈당검사(당뇨병)	정상 : 74 ~ 106mg/dl	
	혈뇨(신장, 방광)		정상 : 현미경 검검상 적혈구 0 ~ 4개(고배율)	혈액형검사	'모름'으로 표시한 경우만 검사 ※미검사자는 본인진술내용 표기	
	신장기능검사 등 5종			병무청 홈페이지-나만의 홈페이지-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확인		

유의사항

- 「병역법」 제14조의2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제77조의2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재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다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종전의 사항이 본 통보서의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사항으로 변경되며, 일부 과목만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받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는 기존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가 표시됩니다.
- 신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신장·체중은 검사 당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 소집대상자는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다음해 5월 중 입영일자를 결정(현역입영대상자에 한함)하여 E-mail과 안내문을 통해 알려드리며 홈페이지와 ARS(1588-9090)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입영신청 방법 및 접수 시기(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 현역병입영 대상 :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접수 : 3월부터, 선택 : 다음연도 입영월)
 - * 20세 이상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이 가능함
 - 사회복무소집 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12월), 재학생 입영원
 -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대학교·고교 재학생(등록금 납부자, 휴학생 포함)은 자동으로 입영연기 되며, 대학 재학생이 입영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별지서식)

채용 신체검사서

(앞쪽)

사 진
(3cm × 4cm)

※ 압인 또는 계인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한 자)	()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가슴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교정)청력	좌: ()	
	우: ()	(색 각)		우: ()	
안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 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 합 격	합격 또는	
합격 여부	[] 불 합 격	불합격 사유	
	[] 판 정 보 류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판정 오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5〉

의무소방원 선발 필기시험문제 문의(질의)서

성 명	
연락처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응시분야	• 의무소방원 선발 제00기
질의과목	• 해당과목 : 국어, 국사, 상식 • 문항번호 : A형 - 00번, B형 - 00번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질의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응시자 의견>

<붙임 6>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이름변경 등 사유발생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재채용팀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

1. 접수자 인적사항

시험명	제00차 의무소방원 선발		
성명		응시번호	
전화번호	☎ : 휴대폰 :		

2. 정정신청 내용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정정사유

4. 첨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록(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원서접수 예시

원서접수

원서작성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원서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1 응시분야

기수선택	☐ 제 60기 ☒ 제 61기	✓ 선택
시험장 선택 (채력)	☐ 대전광역시 ☐ 제주도	✓ 선택
시험장 선택 (필기)	☐ 천안시 ☐ 제주도	✓ 선택
시험장 선택 (인성검사)	☐ 천안시 ☐ 제주도	✓ 선택

✓ 체크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병무청 응시자격 조회

* 민감정보(주민번호)에 대한 활용동의 ☐ ✓ 체크

- 수집되어지는 민감정보는 1. 범죄경력조회(경찰청) 2. 병적증명서 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망) 3. 최종합격자 명부작성(병무청송부용) 4. 신체사항(최종합격 후 피복지급 관련 개인정보)에만 활용됩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사이트에서 삭제됩니다.)

* 관련근거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의무소방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금 지급 등 보상에 관한 사무
3. 제49조에 따른 부상자의 치료에 관한사무

2 개인정보

✓ 개인정보 입력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중복확인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검색 ✓ 주민등록상 주소 * 5자리 새우편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우편번호 검색이 되지 않으면 www.juso.go.kr 검색 후 입력해주세요. 		
✓ 사진 등록 반명함 증명사진	☐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 ☐ 우편물 수령 가능한 주소 * 5자리 새우편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우편번호 검색이 되지 않으면 www.juso.go.kr 검색 후 입력해주세요. 		
사진등록/수정 증명사진등록	우편번호 검색 ✓ 우편물 수령 가능한 주소 * 5자리 새우편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우편번호 검색이 되지 않으면 www.juso.go.kr 검색 후 입력해주세요. 		
우편물 수령지 주소	 		

- 응시자 연락처

연락처 (휴대폰) - - **✓ 응시자 연락처(정확하게 입력)**

E-mail @

- 보호자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휴대폰) - -

보호자 관계
ex.) 응시자의 (부, 모, 조부, 조모, 누나, 형……등)

**✓ 응시자와 연락 안 될 시
연락 가능한 보호자 연락처**

3 학력사항 **✓ 현재 학력사항 입력**

학력	최종학력	최종학력 ▼	졸업여부	졸업여부 ▼
	출신학교		학과	

4 신체사항 (최종합격 후 피복지급 관련 개인정보) **✓ 군복 및 피복 지급 관련 정보**

신장	cm ex.) 170cm (소수점불가)	체중	kg ex.) 50kg (소수점불가)
허리	inch ex.) 24inch (소수점불가)	발사이즈	mm ex.) 265mm (5mm단위)
상의사이즈	 ex.) 95, 100		

5 응시서류 제출

병역판정검사 여부	☐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	--

**✓ 병역판정신체검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당부분에 체크**

6 신체검사 결과 (입력 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공무원 신체검사서 내용과 일치할 것)

시력	☐ 맨눈시력	좌(), 우()	ex) 0.5 1.0
	☐ 교정시력	좌(), 우()	
색각	☐ 정상 ☐ 색맹 ☐ 색약		
혈압	수축기()mmHg, 이완기()mmHg,		
청력	☐ 정상 ☐ 비정상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 미작성		

-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공무원 신체검사서와
입력내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
(참고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서 시력 결과는 모두 맨눈시력 결과임)
- ※ 신체검사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공고문을 꼭 읽어 볼 것

7. 생략

8. 기타

- 본인은 시험에 최종합격 시 「병역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 지원합니다. ☐ ✓ 체크	
- 이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 결격자로 처리하여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 체크	
원서작성일	2018-01-09 15:45:59

원서접수 결과 확인 : 마이페이지 > [보기/수정] > 원서접수 내역 확인

작성완료 >

✓ 작성완료

※ 상기 원서접수 예시는 실제 원서접수 화면과 상이 할 수 있음